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김승수・구자근・김소희

우재준 • 최은석 • 성일종

이종배 · 임이자 · 박성민

박덕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 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.

현재 「국세기본법」상 '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'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 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, 사업장 소재지,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

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1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4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13(과세정보의 제공 요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7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)의 제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상호
- 2. 사업장의 소재지, 주된 업태 및 종목
- 3. 즉시환급 가능 여부
- 4.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8조의13(과세정보의 제공 요
	<u>청)</u>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
	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
	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「조
	세특례제한법」 제107조제2항
	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다
	음 각 호의 과세정보(「국세기
	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
	세정보를 말한다)의 제공이나
	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
	수 있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
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
	<u>에 따라야 한다.</u>
	<u>1. 상호</u>
	2. 사업장의 소재지, 주된 업태
	<u>및 종목</u>
	3. 즉시환급 가능 여부
	4.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